

##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

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0호  
일부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0호  
(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 
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7. 19>

1. “유료방송”이란 「방송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.
2. “저소득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
3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.
4. “방송사”란 「방송법」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)**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(이하 “이용요금”이라 한다) 지원 대상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.

**제4조(협약의 체결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지원 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·기간·해지·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내용)**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##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

1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(Set Top Box) 사용료
  2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(Set Top Box) 사용료
-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신청 및 결정)**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보호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원방법 및 지원시기)**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.

**제8조(통지의 의무)**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원의 중지 및 환수)**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
2.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

3.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

4.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

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9. 7. 19 조례 제1730호,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 
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